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 <개정 2016. 12. 13.>

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 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			
	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			주민등록(여권·외국인등록)번호				
청구인	주소(소재지)				사업자(법인·[<u></u> - - - -)등록번	<u>ই</u>	
	전화번호 팩스번호				전자우편주소				
청구 내용									
공개 방법	[]열람·시청 []	사본·출력물 []전자파일	[]복제·인화물	[]기타()
수령 방법	[]직접 방문 []	우편 []팩스 전송	[]정보통신망	[]기타()
	감면 사유								
수수료									
	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									
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.									
			-1				년	월	일
<i>(</i> 젔수 기고	IO 자) 기하		청구인					(서명 5	또는 인)
(접수 기관의 장) _{귀하}									
접 수 증									
접수번호			성구인 성명						
접수부서			성수자 성명					(서명 또	는 인)
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						년	월	일	
									_
접 수 기 관 장 직인									

유 의 사 항

- 1.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.
- 2.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 거나,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